

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5일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

2. 개정이유
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
- 파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종전의 규칙을 전부 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규칙의 제명 변경

- (현행)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
→ (변경) 파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

나. 규칙의 목적 및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다.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 ~ 안 제7조)

라.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마. 통합사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바. 회의록 작성, 비밀준수, 출석발언, 수당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 ~ 안 제13조)

사.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(안 제14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6월 25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-11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-940-4494 / FAX 031-940-8659(전송시 전화 확인 필요) / 이메일 jins1066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